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9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임광현·박홍배·임오경

김영환 · 강준현 · 정성호

박홍근 • 진선미 • 박희승

이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.

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 명에게 6,515억원, 2023년에는 349만명에 8,502억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음.

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 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%에서 의사,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%로 높 였기 때문이며,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 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이로 인해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는 없이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여야 하고 환급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 고 있으며,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 환급을 받는 과 정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당초대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, 영세한 플랫폼노동자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)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(환급신청)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제5항 및 제129조제1항제3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 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기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29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5호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80조(결정과 경정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0조(결정과 경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가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여야한다.	
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① 원천징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 는 세율(이하 "원천징수세율"이 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. 1.•2.(생 략) 3.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 해서는 100분의 3. 다만, 외국 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	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①	

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의 계약(계약기간이 3년 이하 인 경우로 한정한다)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 다.

4. ~ 9. (생 략) ② ~ ⑧ (생 략)

「부가가치	세법」	제26조제1
항제15호의	용역에/	서 발생하
는 소득에	대해서는	는 100분의
<u>1.</u>		
4. ~ 9. (현형	맹과 같음	·)
② ~ ® (형	해과 간	<u>_</u>)